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변구역 해제 예외 조항 삭제〉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800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수변구역 해제 예외 조항 삭제	2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20일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兩岸) 중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500미터 이내의 지역 중 필요한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하수처리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편입이 늦어져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이 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재산권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하고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제2호 삭제).

<u>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u> <u>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u> <u>시설을 설치한 경우</u>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	--------------

수변구역은 현행법 제4조¹⁾에 따라 각종 입지 규제를 통해 수질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수원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강수계 수변구역 면적은 총 181.164km²가 지정되어 있음.

[한강수계 수변구역 개요]

구분	내용																													
지정 목적	· 상수원에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99년)하여 각종 입지규제를 통해 수질보전 도모																													
지정 기준	· 팔당호, 남한강(팔당댐~충주 조정지댐), 북한강(팔당댐~의암댐) 및 경안천의 양안 경계로부터 1km(특대) ~0.5km(특대 外) 이내																													
지정 현황	· 경기도, 강원도 및 충청북도에 총 181.164km ² 지정 (단위 : km ²)																													
	<table><tr><th rowspan="2">합계</th><th colspan="6">경기</th><th colspan="2">강원</th><th>충북</th></tr><tr><th>남양주</th><th>용인</th><th>광주</th><th>가평</th><th>양평</th><th>여주</th><th>춘천</th><th>원주</th><th>충주</th></tr><tr><td>181.164</td><td>8.097</td><td>20.485</td><td>9.611</td><td>24.203</td><td>32.967</td><td>44.190</td><td>15.712</td><td>5.344</td><td>20.558</td></tr></table>	합계	경기						강원		충북	남양주	용인	광주	가평	양평	여주	춘천	원주	충주	181.164	8.097	20.485	9.611	24.203	32.967	44.190	15.712	5.344	20.558
	합계		경기						강원		충북																			
		남양주	용인	광주	가평	양평	여주	춘천	원주	충주																				
181.164	8.097	20.485	9.611	24.203	32.967	44.190	15.712	5.344	20.558																					
※ 제외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및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행위 제한	· 폐수배출시설, 식품접객업, 공동주택, 공장 등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설치 및 용도변경을 엄격히 제한																													

자료 : 환경부

-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兩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한다.**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호소(「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호소(湖沼)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 ② ~ ⑤ (생략)

수변구역은 동법 제5조2)에 따라 음식점이나 카페, 관광숙박업, 공동주택 등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변구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4조제2항 및 제3항3)에 따라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법 제4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되거나,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는 시설
 -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
 -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 ② ~ ④ (생략)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수변구역 지정 해제 조건 및 예외]

	수변구역 지정 제외 (지정·고시 당시)	수변구역 지정 해제 (지정·고시 이후)	지정 해제 예외
1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2	개발제한구역		-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4	하수처리구역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u>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 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 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 설을 설치한 경우</u>
5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한정)	-	-
6	자연마을이 형성되어있는 지역으로서 현지 실태조사 결과 제외되는 지역	-	-

이에 개정안은 지정 해제 예외 조건 중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하려는 취지가 있음.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구역은 한강수계법 제정(1999.2.8.) 당시부터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이후 수변구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어려워 수변구역 내 주민이 직접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처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1월 28일 한강수계법을 개정하면서 동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임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변구역 지정·관리제도는 한강수계 지자체, 주민 등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제도로서, 현 제도의 변경을 위해서는 상·하류 지역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예컨대, 수변구역 축소의 영향을 받게 될 주민지원 사업의 수혜를 받는 상류 지역 주민,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하류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가 필요함.

셋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들 간 의견 합의도 선행될 필요가 있음.

동 개정안에 대하여 경기도는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적용 시점의 차이로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한 바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 강원도는 하수처리구역 지정 여부만을 기준으로 수변구역 해제를 결정하는 것은 본래 규제 목적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46